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1. 1

주 의 사 항

1 이 가이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08년 6월 13일 개정, ’08년 12월 14일 시행, 법률 제9119호)』의 제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법규의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 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2 이 가이드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주요사업/이용자보호/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기업자료실)에 게시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1. 1

Contents

I. 기업과 개인정보보호	9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0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13
3. 개인정보란?	14
(1) 개인정보의 정의	14
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란?	14
나. 개인에 「관한」 정보란?	14
다.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란?	15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15
(3) 개인정보 범위	17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18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9
가. 정의	19
나. 전기통신사업자	19
다. 영리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22
(2) 준용 사업자	23
(3) 이용자의 개인정보	2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28
II.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31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32
(1) 법 규정 취지	32
(2) 사업자 조치 사항	32
(3) 해설	33
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33
나. 동의를 얻는 방법	34
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35
(4) 벌칙 조항	37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금지	38
(1) 법 규정 취지	38
(2) 사업자 조치 사항	38
(3) 해설	39
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39
나.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39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의 동의조치	41
(1) 법 규정 취지	42
(2) 사업자 조치 사항	43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43
나.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44
(3) 해설	47
가. 제3자 제공과 위탁 행위의 구분	47
나. 위탁 업무의 구분	49
다. 재위탁하는 경우	52
라.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53
(4) 벌칙 조항	53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53
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	54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55
(1) 규정 취지	55
(2) 사업자 조치 사항	55
(3) 해설	55
가. 법정 대리인	55
나.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방법	56
(4) 벌칙 조항	57
5. 동의 획득 절차	58
6.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62
(1) 법 규정 취지	62
(2) 사업자 조치 사항	63
(3) 해설	64
Ⅲ.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67
1. 개인정보의 파기	68
(1) 법 규정 취지	68
(2) 사업자 조치 사항	68
(3) 해설	69
가. 개인정보 파기 시점	69
나. 개인정보 파기방법	70
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71
라. 제3자 및 수탁업체에 제공한 파기 정보	72
(4) 벌칙 조항	72

Contents

2. 이용자 권리 보장	73
(1) 법 규정 취지	74
(2) 사업자 조치 사항	74
(3) 해설	74
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권	74
나. 열람·제공 및 정정 요구권	75
다. 법정 대리인의 권리 보장	76
라. 가입 절차보다 쉬운 탈퇴 절차 마련	76
마. 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한 지체없는 필요한 조치	77
바. 열람 및 정정 요구의 거부	77
(4) 벌칙 조항	78
3.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79
(1) 법 규정 취지	80
(2) 사업자 조치 사항	80
(3) 해설	81
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포함 내용	81
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방법	81
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82
(4) 벌칙 조항	83
4.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84
(1) 법 규정 취지	84
(2) 사업자 조치 사항	85
(3) 해설	85
가. 통지 주체	85
나. 통지 내용	86
다. 통지 방법	86
라. 영업양수자 등의 '별도의 동의' 획득 의무 규정	88
(4) 벌칙 조항	88
5.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89
(1) 법 규정 취지	90
(2) 사업자 조치 사항	90
(3) 해설	91
(4) 벌칙 조항	93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94

(1) 법 규정 취지	94
(2) 사업자 조치 사항	95
(3) 해설	95
(4) 벌칙 조항	95

IV. 행정 규제 기준 97

1. 과징금	98
(1) 과징금의 의미	98
(2) 과징금 부과 규정	98
(3) 과징금 부과 기준	100
가. 기본 과징금	100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103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기준	104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105
3. 정리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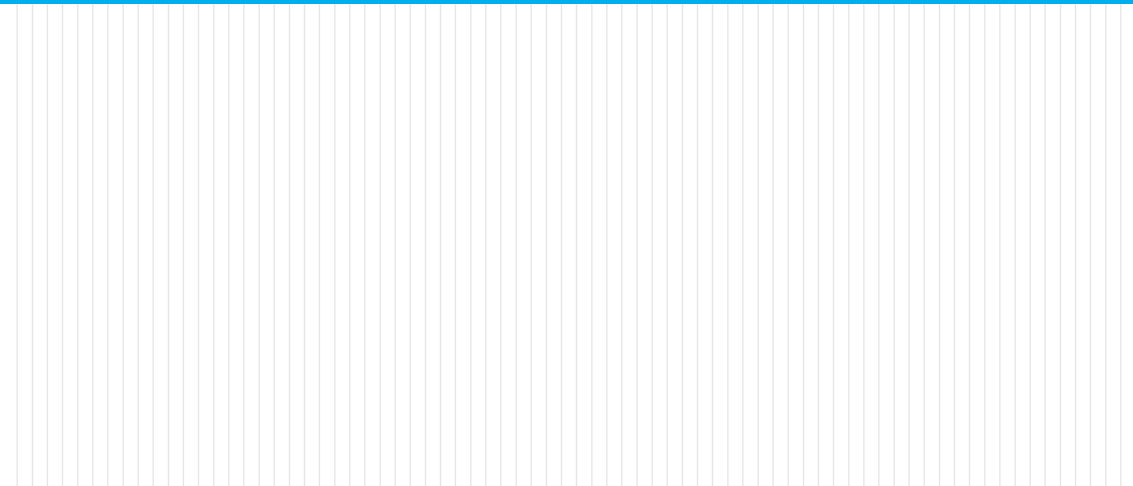
V.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09

1.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	110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라!	111
3.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112
4. 개인정보 A~Z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라. ..	112
5.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라.	113
6.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라.	114
7.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에 노력하라.	114
8.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115
9.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라.	116
10.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라.	116

VI.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11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기업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3. 개인정보란?
4.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I. 기업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 개인정보의 정의

- 최근 급속히 증가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일상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거쳐, 스마트폰 등 각종 스마트 기기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업무처리, 학습, 의료 진료 등 사회 전반에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는 ‘스마트사이어티(Smartciety)’ 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최근 수십년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 일상 생활, 행정서비스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기능하여, 일상을 편리하게도 하였지만, 눈부신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해킹·바이러스 사고, 원치않은 다량의 광고성 정보의 수신,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 계층의 발생 등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또한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지능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전자적 기록과 흔적을 남기지 않고서는 산업 및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일상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대량 집적 및 활용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등의 개인정보침해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게까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정보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실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문제

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는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고객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이는 곧 기업의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는 한편,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손해 배상금 등의 실질적 비용이 소모되는 등, 유·무형의 기업 자산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개인의 측면에서나, 기업의 측면에서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외 개인정보 관련 주요 손해 배상 사례

- ▶ K은행 고객 3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 ⇒ (1심 법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1,024명에게 각각 10만원, 전자우편만 노출된 2명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07.3)
 - ※ (2심 법원) 개인정보 노출에 20만원, 전자우편 노출에 10만원 배상 판결
- ▶ S통신사 블로그 서비스 이용자 중 2,500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블로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07.9)
 - ⇒ 피해자에게 7만원의 상품권 지급 : 총 1억7,500만원 소요
- ▶ L전자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 유출 ('06년)
 - ⇒ (1심 법원) 1인당 70만원 배상 판결, (2심 법원)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 ▶ 일본 Y통신사 고객 451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03)
 - ⇒ 전체 고객에 대한 사과 표시로 상품권 지급 (40억엔 소요)
 - ⇒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야후BB측의 보안조치 소홀을 인정하여 피해자 1인당 6천엔을 배상할 것을 판결 ('06.5)
- ▶ 미국 C 신용정보사 고객 14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04)
 - ⇒ 미국 FTC는 개인정보취급 부주의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Choice Point사에 벌금 1,000만달러를 부과하고 50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 ('06.1)

-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중, 민간 부문에

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IT서비스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 되는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번 개정되어 왔습니다.
- 특히,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 행태의 변화를 반영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도록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을 보장하는 한편, 부당한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빠르게 변모하며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와 기업 경영 형태 등을 고려해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을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곁들여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해당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다시 말해, 이용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05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판시한 바 있으며(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취급하고 이용할 때에는 항상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가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엄연히 정보 주체의 것으로, 사업자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을 빌리려면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빌린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납해야 하듯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도 해당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기간이 끝났거나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란?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¹⁾’의 요건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건은 ① 생존하는 ②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란?

-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 이사·감사 등 임원 정보, 자산,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사망한 자의 정보라 할지라도 생존하는 유족 등 후손과 관련이 있으면 후손의 개인정보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에 「관한」 정보란?

- 개인에 관한 정보란 당해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개인에 관한 정보

1) 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를 말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란?

- 개인정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가 이미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특정 개인이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가 제거되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의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과 같은 정보는 개인마다 고유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혈액형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므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

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 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보**

- 사업자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취미, 가족관계, 혼인여부, 출신학교 등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 서비스이용 기록, 접속 로그(log), 쿠키(cookie), 결제 기록, 이용정지 기록, 페이지뷰 내역, 이용 시간대, 검색 사항, 사이트 방문 내역 등

● 개인정보의 유형과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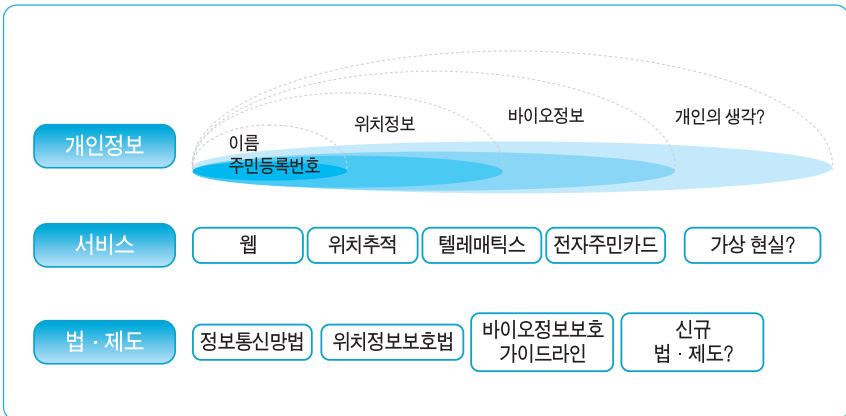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病歷)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 내역 등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등 (신용정보) 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기타	전화통화내역,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 등 기타 GPS 등에 의한 위치정보

- 개인정보는 최초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 관련 정보는 대부분 이용자에게 직접 수집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내역, 통화 기록, IP 주소 등이 포함된 로그기록, 위치 정보 등의 정보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생성 정보의 경우에도 대부분 개인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와 연계되므로 개인정보의 형태로서, 보호 대상이 됩니다.

(3) 개인정보 범위

- 인터넷, GP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생체정보(지문·홍채 등) 등과 관련된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정보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범위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 어디까지 이를지 실로 예측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4.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및 민간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며,
 - 민간 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개별 법률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민간 부문에서는 규제 범위가 가장 넓으며 규정사항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공공	금융	의료	교육
소관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적용 범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개인정보 처리시	신용정보업자들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리하는 환자기록 및 비밀	교육기관이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 취급시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준용 사업자	지자체 및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	· 신용정보집중 기관 · 신용정보업자 · 기타 신용정보 취급 사업자 등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모든 교육기관 및 종사자
수집	· 민감정보 수집 제한 및 필요 최소정보 수집 · 수집 목적 등 고지 및 사전동의 획득 후 수집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보유 및 민감정보 수집 금지	· 수집시 목적명확 · 합리적·공리적 수집 · 신용정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관련 조항 없음	교육적 목적 제한 및 제3자 제공 금지
이용/제공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파일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시 동의 획득 의무 · 상거래 관계 설정·유지 여부 판단 외 제공 금지	의료기록 누설 및 제3자 제공 금지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 자료 등을 동의없이 제3자 제공 금지 (초·중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이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정의

-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제1호²⁾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기업, 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입니다.
 - 별정통신사업자는 앞서 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업무를 제공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에서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업무 이외의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경매·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등의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와 P2P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별정통신서비스의 예³⁾]

대분류	소분류	내용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 1호)	음성재판매	o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화역무(국내, 국제)를 제공
	인터넷전화	o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수신 하는 전화 역무를 제공 (단,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원간에 음성 등을 송수신하는 것은 제외) ※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경우 별정통신 1호임
	인터넷접속	o 자체 교환설비(ATM스위치 등, 단, 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국제전화전용 회선재판매	o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국제 콜백 서비스	o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가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별정통신 2호)	호집중	o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고 그 가입자들이 이용하는 통신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서비스 (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고 영업대행 수수료만 받음)
	재과금	o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1호사업자의 다량 할인제도에 기초한 차익 거래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 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 (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무선재판매	o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로 호집중, 재과금 서비스의 일종이나 무선통신이란 점에서 다름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o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연동설비와 호 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별정통신2호임
	인터넷접속	o 별정통신1호와 유사하나 자체 교환설비가 없는 점이 다름
	국내전용회선 재임대	o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고속·대용량의 전용회선을 임차하여 저속·소용량으로 분할 또는 전체로 재판매하는 서비스
	주차안심 서비스	o 실시간 통화형 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호출자와 차주의 실시간 통화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 교환 기능이 있어 별정통신등록 o 메시지 전송형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전화망과 지능망 설비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을 송신하는 것에 해당됨
	060전화정보	o 060을 이용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실시간 통화형 서비스에 한함)
	송출대행 서비스	o 전기통신설비(송출장비, 전용회선)를 이용하여 타인(PP)의 통신을 매개(영상을 송신)하는 서비스
	구내통신사업 별정통신3호	구내통신사업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 (별정통신4호)	MVNO	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 o 이동전화서비스망을 임대하여 자체 브랜드로 독립적인 상품 및 요금을 설계하여 고객을 유치·관리함

3) 참조 : 중앙전자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부가통신역무의 예시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호스팅 및 관리서비스	호스팅서비스(웹, 서버, 스토리지)	
			Co-location	
			보안관리 서비스	
			도메인관리 서비스	
			기타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고도팩스서비스			
	신용카드검색(CCIS)서비스			
	컴퓨터예약(CRS)서비스			
	전자문서교환(EDI)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			
	전자지불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인터넷전자상거래(수수료)			
	기타 부가통신응용 서비스			
콘텐츠제공 서비스	콘텐츠제공 서비스 (전화수수료)			
	콘텐츠제공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인터넷 방송	
			인터넷 게임	
			온라인 교육(e-러닝)	
		정보제공	금융/경제	
			가정/생활	
			엔터테인먼트	
			의료/법률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음악	디지털영상
				벨소리
				통화대기음
			기타	
		디지털출판물(e-book, 만화 등)		
		인터넷광고(배너, 검색광고)		
		기타		
기타-콘텐츠서비스				
기타부가통신서비스				

4) 중앙전자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다. 영리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학술·종교·자선단체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야 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정보를 제공”한다 함은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하는 등의 일련의 정보 제공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미용, 관광, 영화, 뉴스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정보의 제공을 매개”한다 함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우편 서비스와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인터넷 상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웹호스팅업체, 인터넷쇼핑몰업체, 경매·커뮤니티·미니홈피·블로그 서비스제공자, P2P, 와레즈사이트 운영 사업자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의 규모나 회원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기업의 규모,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정보통신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영리 기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정보통신방법의 적용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 차원의 웹사이트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곧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부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역시 정보화 처리되면서 정보의 이용과 제공이 원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또한 급증해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⁵⁾ 이들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준용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 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준용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0.11월 기준)

[준용 사업자]

업종	업종 근거 규정	개인정보 수집 예시
여행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 등을 위해 여행객 정보 수집
호텔업		멤버십 클럽 운영 및 객실 예약·이용
항공운송사업	항공법 제2조제26호	마일리지 서비스 회원 정보 수집
학원	학원설립법 제2조제1호	수강 신청 및 등록을 위해 학생 정보 수집
교습소	학원설립법 제2조제2호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콘도 회원 및 투숙객 정보 수집
할인점	유동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대규모점포)	마일리지 카드 회원 정보 수집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	유동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5) 제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업종	업종 근거 규정	개인정보 수집 예시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	분양계약서에 있는 분양자 정보
주택관리업	주택법 제53조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정보
건설기계대여· 매매·정비·폐기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중장비 기사 정보 등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자 정보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	차량 매매자 정보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차량 렌트자 정보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입자 정보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등)	의료법 제3조	환자 정보 및 의료 기록 등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4조	구직자 정보
정유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멤버십 가입자 정보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골프장·피트니스 클럽 등 회원 정보
비디오대여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비디오 대여자 정보
서점	출판문화사업진흥법 제2조	멤버십 가입자 정보 등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 그런데 최근 들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용 사업자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준용 사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형 할인점은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 메뉴를 통해 개

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때 오프라인으로 마일리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준용 사업자’ 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웹사이트로 회원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밖에도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법 제24조제2항),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률」상 인터넷주소관리자(법 제15조제2항)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이용자’ 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시 말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용자’ 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4호)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예를 들어, 이동통신회사는 해당 통신서비스나 웹사이트에 가입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나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해당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단순히 상담을 하거나 일시적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 역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또한 ‘이용자’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일부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준용 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제공하는 용역과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시 말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특정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정보통신망법 이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바가 있더라도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해당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 거래 기록 등의 신용 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일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 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을 수립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은 민간 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규

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서 예로 든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동의 절차 등은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따르되 개인정보취급방침 수립·게시 등 신용정보보호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 이것은, 금융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6. 정보통신방법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규정

- 정보통신방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조항별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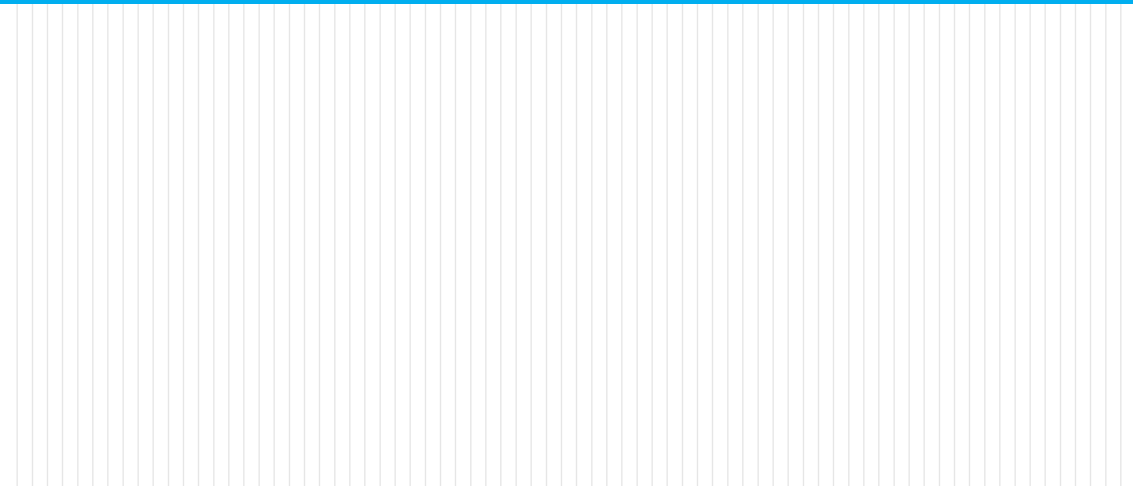
[정보통신방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주요 내용]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조치사항
제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등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규정
제23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등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금지사항과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한다고 명시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다른 사용 금지
제24의2	개인정보의 제공 등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및 각 획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수탁자의 개인정보 획득절차 및 취급 범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방법과 절차·이용 범위를 규정
제26조의2	동의획득방법	개인정보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는 방법
제27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지정에 따른 자격요건 및 규정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명시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사항을 명기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 또는 누설 금지를 규정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조치사항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달성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폐지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 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법정대리인의 동의·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하여 명시
제32조	손해배상	위 사항들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제54조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사항 항목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금지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의 동의조치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5. 동의 획득 절차
6.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II.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획득 의무

1.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조치

근거 법령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법 규정 취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시점(회원 가입, 서비스 가입 등) 이전에 이용자가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3가지 사항들을 이용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아래의 예와 같으며,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의 예]

정보통신 서비스 가입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혹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을 위해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
	웹사이트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쇼핑몰, 게임, 포털 사이트 등 영리목적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회원가입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 복권 사이트 등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등 • 호텔, 할인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항공사, 정유사 등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더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온라인 예약·상담
	온라인 예약·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예약을 위해 예약자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대출 업체·보험 회사 등에서 대출 및 보험 가입 상담을 위해 상담자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게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 문의 사항 및 후기 등에 대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게시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경우
	이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 행사 등 이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나. 동의를 얻는 방법

- 동의를 얻으려면 회원 가입 화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전 단계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한 아래 3가지 항목을 별도로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예) 본인 확인, 고지 사항 전달, 물품배송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예) 이름, 전화번호, 접속 내역 등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예) 회원탈퇴 등 서비스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주의 :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 이므로,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문을 게재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적절한 조치 사항이 아닙니다.

[이용자 동의 사항 게재 및 동의 방법의 예]

① 회원 가입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주민번호 - 이메일주소 - 자택/휴대전화 - 자택/직장주소 - 기념일(생일정보) - 포인트 거래정보	- 당사자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활용 - 공지,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 당사자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제공 - 당사자 진행하는 제휴행사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자료로 활용 - DM, 경품 및 소핑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 확보 - 기념일 쿠폰 및 이벤트 정보 제공 -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및 서비스 개발	포인트 회원 탈퇴 시까지
		<input type="radio"/> 동의함 <input checked="" type="radio"/> 동의안함

② 상담, 게시판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상담 요청에 대한 회신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음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
 -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안전하게 보유하고,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용하게 됨
- 개인정보 입력

성명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이메일 주소	<input style="width: 30%;" type="text"/>	@	<input style="width: 30%;" type="text"/> 직접입력 ▼
연락처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 <input style="width: 20%;" type="text"/>

③ 경품, 이벤트 개최시

□ 경품이벤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품 당첨시 본인확인과 경품배송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벤트 종료시(경품당첨 및 배송완료 후)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단순히 '텔레마케팅에 활용' 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고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목적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24조⁶⁾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따라서, 최초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또 얻으려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수고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수집 시점에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부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목적외 이용 금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위 사항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금 정보, 통화 사실 기록(도수), 접속 로그(log), 결제 기록, 이용 정지기록 등의 정보들과 같이 불가피하게 생성되어 발생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어 수집되지만, 이용자에게 매번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에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들이 수집된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시점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통해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에서 예외가 된다는 사항은, 단순히 생성 시점마다 건별로 동의를 받는 것을 예외로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종류의 개인정보를 모두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정보들을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통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이용하면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외 이용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별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한 사실, 미납액 등에 관한 정보들은 요금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 수집을 규정한 조항이 있으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정보통신망법 제31조⁷⁾

- 정보통신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⁸⁾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본인의 허락 없이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지만,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Tip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3가지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혹은 개인정보취급을 위탁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2. 개인정보 취급 위탁 및 제3자 제공시의 동의조치”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3장 동의획득 절차”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벌칙 조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 3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과징금 부과(제64조의3제1항제1호)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71조제1호)

7)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8) 제21조(금지행위)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금지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규정 취지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은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한 이후에 추가로 이용 목적이 발생했거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바뀌었어도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동 예외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은 수집 및 이용 목적 안에서만 활용
- 법 제22조제2항 각호⁹⁾에 의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예외 조항 범위 안에서만 활용
- 추가적인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음

9) ①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해설

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

-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최초의 시점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이용 범위가 추가되거나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意的 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동의를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우송하거나 입력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를 회원가입과 무관한 우편주문판매에 이용

나.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그런데 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들은 애초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집 및 이용 목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예외 사항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통화 기록, 접속 로그, 결제 기록 등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실시간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라고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 통화 기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통화 기록은 이용자가 유선 전화나 무선전화를 이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정보들입니다. 통화 기록 정보가 생성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들은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유선이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요금 정산을 위해 수집한 요금액, 납부 또는 미납 사실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요금 정산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목적외 이용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했다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시의 동의조치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1) 법 규정 취지

- 사업자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이용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위험 또한 증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업자가 제3의 기관에 자사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 그러나 기업이 경영 효율성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다수의 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요즘의 사회·경제적 추세이므로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마다 일일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통신회사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개통을 위해서 전국 각지의 설치 대리점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 업체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본사가 아닌 외부의 수탁업체이므로 이들 업체로 하여금 가입자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얻게 하는 것인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4항은 위탁 업무를 주는 본사로 하여금 수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 제공과 위탁을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취급 위탁업무에 대해 정보통신방법에서는 제3자 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동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이용자가 믿고 신뢰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지만,
 - 오늘날 많은 사업자들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탁을 행하고 있으므로 위탁 업무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과는 상이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수탁업체명 ②수탁 업무 내용을 알리고 동의 ● 단,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 받을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언제까지) 등 4가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①누구에게 ②어떤 이유로 ③무엇을 ④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의 내용이 변경되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획득 예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당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 (제휴카드 발급자에 한함) ○ ○○카드사 (제휴카드 발급자에 한함)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거래에 필요한 본인확인 ○ 포인트 거래 대금 정산 ○ 고객문의 및 불만에 대한 해결 ○ 제휴행사 및 서비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포인트카드, 번호, 거래정보, 주소,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회원 탈퇴시
<input checked="" type="radio"/> 동의함 <input type="radio"/> 동의안함		

- 제3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 이외의 모든 개인·법인·조직을 뜻합니다. 계열사이거나 본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조직 일지라도 별도의 법인이라면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영업 양수인이나 인수합병회사는 양도인, 피인수 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 양도·양수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Ⅲ.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의 ‘4. 영업 양수·양도시 조치 사항’을 통해 다시 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폐기 등) 업무를 위탁 처리할 경우, ①개인정보 취급을 위탁 받는 자(수탁자)와 ②개인정보취급위탁의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법률 제25조제1항)

- 다시 말해, 제3자 제공과는 다르게 ①누구에게 ②왜 주는지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 예시]

● 의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① OOO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고객 정보 DB시스템 위탁 운영 (전산 아웃소싱) : ㈜ I&C	나. 고객 불만 접수 처리 등 민원처리 : I&C	다. DM 발송 위탁 : 이림, 빌포스트
라. SMS 발송 위탁 : 엠, 윈 , 콤	마. 실명확인 서비스 위탁 : 신용평가	바. 개인정보 수집 위탁 : (주) 은행(카드에 한함), (주) 카드(카드에 한함), (주) M&C(카드에 한함), 은행(카드에 한함)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 업체가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업체 명을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에 공지합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시행령 제10조)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5조제2항)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①누구에게 ②왜 주는지에 대해서 이용자가 알도록 조치하면 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수탁업체가 많을지라도 해당 수탁업체 명을 모두 열거하여 동의(제25조제1항)를 얻거나 공개·통지(제25조제2항)를 하여야 합니다.
 - 특히, 동의를 얻어야 하는 수탁 업체는 관련 업체명을 동의 절차에 모두 명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탁으로써 단순 공개·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수탁 업체는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할 수 있습니다(예: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 경우에는 대표 업체명과 업체 수를 기재하되 링크(웹사이트)를 통해 상세 내역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예시) 통신망의 설치·개통, A/S, 동의 철회 시 장비의 회수 등 : 000통신 등 총 1181개

- 수탁업체나 위탁업무가 변경될 때에도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를 조치해야 합니다.(법률 제25조제2항)

※ 단, 수탁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업체가 단순히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고

▶ 동의, 통지, 공개·게시의 구분

-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에서 조치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단순 안내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조치 사항은 다르지만, 이용자와 연락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에, 동의·통지·안내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의 동의는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하는 경우가 아닌 최초 수집 후에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초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일단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동의) 동의는 이용자와 ①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야 하고 ②반드시 이용자로부터 회신 등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이후에 이용 목적 확대, 제3자 제공 등으로 추가적인 동의를 얻으려면 전화, 이메일 주소, 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 (통지) 통지는 이용자와 ①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야 하지만 ②회신 등의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업 양도·양수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주소,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회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공개·게시) ①개별적인 연락처를 활용할 필요도 없고 ②회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코너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같이 게시 장소가 법률로써 특별히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통지·공개/게시안내 방법의 비교]

구분	요건	예시
(추가)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동의를 받은 사항 외로 수집·이용 목적 확대, 추가적인 제3자 제공 및 위탁 처리 등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을 대상으로 동의받은 목적외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제휴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전송한 후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표시된 회신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우편, 서면, 팩스 등을 통해 동의서 전송 후 동의의사가 표시된 자료를 회신 받음 전화를 통해 동의 사항 설명 후 구두로 동의 획득 등
통지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 양수·양도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을 통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공개로 갈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하고 있던 웹사이트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CS센터 운영 업체가 변경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하되 회신을 받을 필요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우편,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해당 사항 전송 등
공개·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실 공개(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통지로 갈음 가능)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공개 영업·양도 양수 사실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 발송 위탁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 방침 및 그 변경 내역을 공개 운영하고 있던 웹사이트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팝업창 게시 등

(3) 해설

가. 제3자 제공과 위탁 행위의 구분

- 위탁과 제3자 제공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당 사업자가 아닌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까닭에 이들을 서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이란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타인(제3자)

으로 하여금 그 책임과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은 위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시 말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반면 위탁은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사이트가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사이트가 보험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보험 TM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게임 사이트 본래의 계약 목적인 인터넷 게임서비스 제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는 오로지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라는 사무처리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므로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위탁업무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이용자가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 제3자 제공에서는 당초 이용자와 계약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탁 및 제3자 제공의 예]

	업무 위탁	제3자 제공
고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불만 접수 처리 등 민원 및 서비스 안내 대응을 위한 고객 센터 아웃소싱 • 대리점 등 외부 영업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가 신청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을 위해 부가서비스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 수집한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 아웃소싱 • 고객 정보 DB 및 고객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전산 아웃소싱 • 요금 고지서 및 홍보 우편 발송 대행 • 물품 배송 및 서비스 A/S 아웃소싱 • 이벤트 당첨 고객에 대해 경품 배송 위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회사가 보험 영업 TM에 이용하도록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 • 포털 사이트가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TM에 이용하도록 전체 회원 정보를 자회사에 제공 • 인터넷기업이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응모한 고객 정보를 카드 판촉 활동에 이용하도록 카드 회사에 제공동의 업무
동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한 텔레마케팅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자사의 인터넷 전화, IPTV, 결합 상품 등을 홍보) •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PC보안서비스 및 유해매체차단 등 자사 명의의 부가적인 서비스 가입을 위한 텔레마케팅을 위탁하는 경우 	

- 개인정보 취급위탁은 본사의 업무를 외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취급 업무가 수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적으로 본사와 수탁 업체 간에는 용역 계약 혹은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나 계약의 형태나 명칭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본사의 업무를 제3의 업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급이 발생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나. 위탁 업무의 구분

-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업무(제25조제1항)와 단순히 공개·통지(제25조제2항)로 갈음할 수 있는 위탁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개·통지로 처리 가능한 위탁 업무

-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의 경우, 이용자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다고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효율적인 물품 배송을 위해 A 배송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송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주문자와 수취인의 개인정보들의 취급 또한 같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해당 배송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 위탁을 거부한다면 이용자는 원활한 물품 배송을 받을 수 없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품 배송 업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탁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통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위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은 경우 통신망 개통, A/S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업무 위탁

- 온라인 쇼핑몰이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물품 판매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송 업체 대상 물품 배송 업무 위탁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통신서비스 개통을 위한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개인정
보의 수집을 위탁
- 고객이 작성한 서면 가입신청서의 전산 입력을 외부 업체에 아웃소싱
- 고객 정보 취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SI업체에 아웃소싱
- 요금 고지서 및 DM 우편 발송의 아웃소싱
- 연체 요금 정산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 업무 위탁
- 고객의 불만 처리 접수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해 고객응대센터(콜센터)를 외
부 업체에 위탁
-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 리서치 업체에 고객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실명인증(또는 본인인증)을 위해 신용평가사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자사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위해 결제 대행사(PC)에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위탁 업무

- 이용자와 계약한 주요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한 부가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것은 그 성격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큰 차이
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위탁 업무의 경우에도 동의를 얻은 절차를 조치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세부적인 동의 획득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장의 '4. 동의 획득 절차'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사례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나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하여 자사 제품 소개 및 부가서비스 등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란? 본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동 가이드에서는 본래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제3의 사업자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를 본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PC 보안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참 고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제공

- 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이름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자사 업무로 인정

※ 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사업무 판단기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 ① 당해 부가서비스가 본래의 통신서비스에 부수되어 시행되는지
- ② 개인정보 제공이 당해 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한정되는지
- ③ 부가서비스가 당해 통신사업자의 고객에 한정하여 시행되는지
- ④ 통신사업자 '명의'로 부가서비스가 시행되는지

- 일시적인 이벤트 혹은 경품 행사의 운영 업무를 홍보대행사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 포털 사이트 내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위해 포털 사이트 운영사가 온라인 광고 아웃소싱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상기 위탁업무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Tip

판촉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기업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는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위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에 이벤트의 개최 여부 및 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원 가입 때보다 먼저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벤트 팝업창 및 응모 화면에 위탁업체명, 위탁 업무명을 명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Tip

개인정보취급업무 자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때에는 위탁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개인정보취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이 명시되었으면 위탁 관계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인력 파견 계약을 맺고 해당 인력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면 위탁관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사례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재위탁하는 경우

-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탁 업체가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외부 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본사가 이용자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재위탁을 허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 따라서, 수탁업체가 수탁받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본사는 이에 대한 동의 혹은 공개·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수탁업체가 본사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재위탁함으로써 본사가 법률을 본의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관련 사례
 - 대형 SI 업체에 고객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대형 SI 업체가 그중 일부 개발 업무를 중소 SI 업체에 하청을 준 경우
 - ⇒ 본사는 대형 SI 업체와 재하청을 받은 중소 SI 업체의 업체명과 업무명을 명시해야 함
 - 홍보대행사에 이벤트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홍보대행사에서 경품 배송을 택배업체에 다시 위탁한 경우
 - ⇒ 본사는 홍보대행사 및 택배업체의 업체명과 위탁 업무명을 명시해야 함

라.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 정보통신망법은 본사가 수탁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제4항)
 - 본사는 업무위탁 계약서를 통해 취급 목적 등 수탁자가 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 취급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해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수탁업체를 본사의 직원으로 간주합니다(제25조제5항)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수탁 업체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 업체 또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수탁 업체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탁 업체 또한 행정처분 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벌칙 조항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제64조의3제1항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71조제3호)
-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71조제3호)

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

- 위탁 사실 미고지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76조제2항제1호)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위탁
 - 매출액의 1/100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제64조의3제1항제5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71조제4호)

4.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조치 사항

관계 법률 조항

-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②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정취지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인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러나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자칫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조치사항

- 사업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①수집·이용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해설

가. 법정 대리인

- 대개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친권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견인은 민법 제938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¹⁰⁾
- 민법에서 정한 후견인의 순위는 부모의 유언에 의한 경우,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고아원 등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이 됩니다.¹¹⁾

나.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방법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아동이 항상 법정대리인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이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 법정대리인을 반드시 대동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데다가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편한 일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 수집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수집한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당연히 동의 획득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1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후견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 숙련된 상담원이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하는 예

- ▶ (휴대전화 개통) 14세 미만 아동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을 할 경우 가입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란을 마련합니다.
- ▶ (웹사이트 가입) ①일반 회원과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경로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②아동에게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을 알립니다. ③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으면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법정대리인이 동의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수집한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파기합니다.

-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정보인지,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아동과 나이차가 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아동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해당 법정대리인에게 기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회원탈퇴 하는 등 아동의 정보를 파기하는 시점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4) 벌칙 조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만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매출액의 1/10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제64조의3제1항제7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71조제8호)

5. 동의 획득 절차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률 조항	주요 내용
제22조제1항	개인정보 최초 수집하거나 수집한 이후에 동의를 얻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24조의2제2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25조제1항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할 경우
제26조제3항	영업양수자 등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경우
제63조제2항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할 경우

관계 법률 조항

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2조 (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정보통신방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해 최초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원가입 시점에서 이미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장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방법은 구체적인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
 - (인터넷 사이트) 동의를 구하는 화면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회원가입화면, 로그인 화면 등)
 - ※ <예시>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 가입 절차에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게재하고 ‘동의함’, ‘동의 안함’ 을 선택하여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
 - (서면)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전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자가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는 방법
 - ※ <예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백화점·항공사·호텔 등에서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 가입신청서에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대해 가입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
 - (전자우편)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한 후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 <예시> 동의 내용을 전자우편에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동의합니다’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를 입력하게 하거나 동의란에 체크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으로 회신 받는 방법
 - (전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용자가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 등이 직접 동의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어 동의를 받거나, 동의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전화 통화를 해 동의를 얻는 방법

※ 〈예시〉 전화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상담원 또는 ARS 등으로 동의할 사항을 알려주고 동의를 얻는 방법 또는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을 알려주고 재차 전화를 걸어 동의를 얻는 방법

- 특히,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시점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과는 별도로 관련 사항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등 일반적인 동의 내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사항은 각 건별로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조치하여,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그간,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원치 않는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안)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문방위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24조의2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A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 식별, 공지 사항의 전달, 신상품의 소개	회원탈퇴 시 삭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원활하고 상시적인 서비스 제공 분쟁 해결	회원탈퇴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삭제

동의함

동의 안함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여부
B게임사	게임 신상품의 소개 메일 발송, A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메일 발송	성명,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제공□
C쇼핑몰	A사와의 제휴 적립카드 소개를 위한 텔레마케팅	성명,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삭제	제공□

동의함

동의 안함

[위탁 동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D인포서비스	E사와의 제휴 상품 소개
F리서치	신규 이벤트 추진 시 설문 조사

동의함

동의 안함

6.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 제공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규정 취지

-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것으로 개인별로 유일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주요 식별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애초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에 부여받은 자의 성별, 생년월일, 나이, 출생지역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유출 시에는 명의 도용 등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많은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신원 확인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의무사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이용자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단, 이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조치할 의무가 있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신청서 작성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을 조치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정의	서비스 규모
포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게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전자상거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기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3) 해설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본인 확인, 개인 식별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실명인증은 본인확인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아이핀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아이핀 홈페이지(<http://www.kisa.or.kr>)에 참고자료와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 ※ 참고자료 :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i-PIN 도입 매뉴얼(책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i-PIN(책자), 인터넷에선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등
- ※ KISA 홈페이지(www.kisa.or.kr) 접속 후 <주요 사업> - <이용자보호> - <아이핀> 클릭



-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1. 개인정보의 파기
2. 이용자 권리 보장
3.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4. 영업 양수·양도 시 조치 사항
5.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Ⅲ.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

1.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 조항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1) 법 규정 취지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회원탈퇴했거나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처럼 개인정보를 빌려온 목적이 없게 되면,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연히 파기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①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②이용자에게서 동의를 얻은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③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개인정보 파기 시점

- 정보통신방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이 도래하였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 또한 사라지므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에서 탈퇴한 경우
-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 이용자가 마트 마일리지 회원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
- 제3자 업체에 기획 TM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업체 TM 업무가 종료한 경우
- 위와 같이 통상적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요금 정산 등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해당 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보유해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해지 고객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취지 및 조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 장의 '3.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또한, 해지 후에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종료하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얻은 기간이 경과한 경우
 - “회원탈퇴 후 재가입방지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유합니다”라고 동의를 얻고 회원탈퇴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때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의 경우 12개월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방법)의 경우 5년
- 해지고객이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금이 정산될 때까지
 -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요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보유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 시점까지 보유 가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4호 규정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개인정보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기록은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데이터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 ‘로우레벨포맷’¹²⁾ 명령으로 포맷을 하거나, 일반 포맷을 한 뒤 불필요한 정보를 여러 번 덮어쓰우는 방법으로 다시는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참 고

▶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웨어 파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디스크를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디스크를 파쇄하거나, 디가우저(Degausser: 데이터 소거장치)라는 자기장치를 이용해 강한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하드디스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폐기하고 난 하드디스크는 두 번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영구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포맷이나 로우레벨포맷(공장초기화 포맷) 등은 복구도구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지만 영구삭제 소프트웨어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 위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 덮어씀(Overwrite)으로써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듭니다.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영구 삭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7번 반복해 덮어쓰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6회 반복하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연구자료도 발표했습니다.

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 이용자가 회원탈퇴 혹은 서비스 해지 등으로 동의를 철회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할 경우에는 동의를 철회한 시점 이후에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가입고객 DB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일반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DB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전산 장비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 외에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DB 분리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12) ‘로우레벨포맷’이란 하드디스크를 공장에서 나온 초기상태로 만들어주는 포맷을 말함. 일반 하이레벨포맷은 파티션을 나눈 디스크드라이브의 내용을 없애주지만 로우레벨포맷은 파티션 구분까지 삭제함.

해지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일반 고객 정보와는 다르게 보다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업무상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를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열람 혹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라. 제3자 및 수탁업체에 제공한 파기 정보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업무 제휴 등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정보를 파기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제휴 계약서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파기 의무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계약대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탁업체가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서상에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방법을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벌칙 조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76조제1항제4호)

2. 이용자 권리 보장

관련 조항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영업양수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영업양수자 등”으로 본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규정 취지

-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사용되
는지 언제든지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며, 더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이용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이와 같은 이용자의 권리를 항상 보장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사업자가 자신
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열람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 단,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동의 철회 등에 대한 권리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합니다.

(2) 사업자 조치 사항

-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①이용자의 열람·정정, 삭제
및 동의철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②이용자가 이러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개해야 하며 ③이용자의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해설

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권

-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웹사
이트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회원탈퇴, 서비스 철회 등의 동의 철회 의사를 표
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의 철회 후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합니다.

- 웹사이트는 통상적으로 '회원탈퇴' 메뉴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메뉴 예시]

회원정보수정
회원전환
회원상태
경매발점차감
회원등급

● **회원탈퇴신청**

회원탈퇴란, 육선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를 의미합니다. 육선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이메일의 경우 회원탈퇴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발송이 중지됩니다. 다만, 드물게 데이터 처리정상상 일부 지연될 수 있으며, 회원탈퇴 요청 후 48시간이 지난 후에 광고성 이메일/SMS를 접수하시는 경우 당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탈퇴시 유의사항

- 회원탈퇴를 위해선 아래 2가지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판매 또는 구매가 진행중인 상품이 없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이머니 또는 출금 가능한 이머니, 판매에처음이 없어야 합니다.
- 회원탈퇴 시 보유하고 계신 쿠폰과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 하더라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탈퇴회원 회원정보 보존기간

- 회원탈퇴가 완료되더라도 판/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원정보가 일정기간 보존됨을 알려드립니다.
-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보관여부는 거래내역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내역 없음 :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보관후 삭제
 - 거래내역 있음 : 상법에 따라 경매 낙찰내역 보존 필요에 따라 아이디와 함께 기존정보는 5~10년간 보관

● **탈퇴회원 재가입 기준**

육선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동일 아이디로 재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래내역이 없는 회원은 새로운 아이디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래내역이라 함은 판/구매활동 이외에 **입찰, 이머니 충전/출금, 포인트 획득, 쿠폰 다운로드** 등 육선 ID를 사용한 모든 활동내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탈퇴회원에게는 재가입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탈퇴 후 7일 이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회원의 경우 신규회원 대상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분	재가입기준		비고	재가입유예기간
	새로운 ID	동일 ID		
거래내역이 없는 회원	●	❌	예전 사용했던 아이디로 재가입 불가능, 새로운 아이디로만 가입 가능	회원탈퇴 후 7일 경과 후 재가입 가능
거래내역이 있는 회원	❌	●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 할 경우 예전 아이디실적이 그대로 반영됨	
영구정지 회원	❌	❌	영구정지회원은 재가입 자체가 불가능함	

회원탈퇴 신청

※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표준양식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열람 · 제공 및 정정 요구권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상태이며 오류는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공된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시 말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리, 오류가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그 이용 내역, 제3자에

게 제공한 내역 등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30조제2항의 열람 및 제공,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내역
4.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 등 이용 내역이 생성된 경우 해당 정보

다. 법정 대리인의 권리 보장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정보 주체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사합니다.
 - 따라서,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혹은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주고,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정보 주체가 요청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 단,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아닌 통화 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의 통신 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당사자 이외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¹³⁾의 제공이나 공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라. 가입 절차보다 쉬운 탈퇴 절차 마련

- 이용자가 회원탈퇴나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등 동의 철회를 하는 방법은 회원가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13) 통신사실확인자료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④ 사용도수, 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⑥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⑦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 예를 들면, 웹사이트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았다면 동의철회나 회원탈퇴도 반드시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회원가입 절차는 쉽게 하면서도 탈퇴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의철회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쉬워야 합니다.
- 또한, 동의철회나 열람·정정 방법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마. 이용자 권리 행사에 대한 지체없는 필요한 조치

- 정보통신방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열람이나 정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없는 한 바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이후 개인정보 이용 내역 전체를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열람·정정 요구에 대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바. 열람 및 정정 요구의 거부

-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오류에 대한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

1.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재산, 신체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4) 벌칙 조항

-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사업자가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률 제76조제1항제4호)
-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 오류 정정을 요구받았으나,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3.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관계 법률 조항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②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법 규정 취지

-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보유·관리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집 및 이용목적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최초로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최초 수집 단계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이용자가 숙지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언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사항

- ①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제2항에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
- ②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3) 해설

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포함 내용

- 이용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정하여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될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작성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guide.kisa.or.kr)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예시’ 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작성하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명칭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취급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이 조항을 통해 명칭은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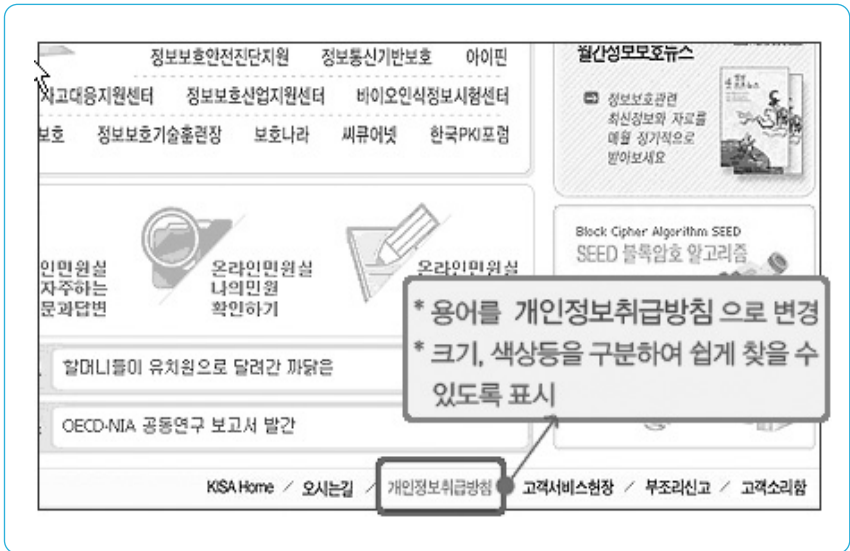
-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사무실의 보기 쉬운 장소,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하거나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의 예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주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홈페이지 첫 화면 최하단 중앙에 게시한 후 클릭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점포·사무소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공고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이용자에게 월 단위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또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글자크기, 색상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용예시]



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 변경 공지 방법

1. 홈페이지 첫 화면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
2. 서면, 팩스, 이메일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3. 점포·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4) 벌칙 조항

-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76조제2항제4호)

4. 영업 양수 · 양도 시 조치 사항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주소 ·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②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영업양수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 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 서면 · 모사전송 ·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천재 · 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규정 취지

- 상거래와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업자 간의 영업 양도 · 양수 및 합병은 기업 활동이 있는 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고객정보 또한 양도와 양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영업 양도는 타인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 그러나 영업양도 및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 일일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뿐더러 기업 간 양도·양수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통지의무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사업자는 영업양도, 합병, 상속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승계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사업자 조치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이전에 관한 사실을 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①이전에 관한 사실의 상세 항목과 ②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해설을 통해 상세 설명
- 또한, 영업 양도자가 개인정보 수집시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목적과는 다르게 영업 양수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해설

가. 통지 주체

- 영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이 발생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때 이용자에게 이전 사실이 통지되어야 하는데, 통지 의무는 우선적으로 양도자(개인정보를 넘겨주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그러나 양도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통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은 정보 주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통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정보 주체는 이전 사실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방법에서는 양수자(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사업자)의 통지 의무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통지했다면 양수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지만, 양도자가 통지하지 못했다면 양수자에게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양도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통지 내용

- 영업 양도 · 양수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영업 양도 ·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를 안내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통지 방법

- 영업 양도 ·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전자우편 · 서면 · 팩스 ·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해 해당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별 통지가 불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지해야 할 대상자 중에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대상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개별 통지 외에 홈페이지 게시 혹은 신문 공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통지를 하더라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지 및 게시 시점은 계약 시점과는 무관하게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통지의 경우는 이전 행위 발생 이전에, 게시는 이전 행위 발생 이전 30일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 양도·양수 과정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DB가 저장된 서버 등 저장 매체 및 문서의 소유주가 변경되므로, 계약 시점과 개인정보 이전 시점이 동일한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이전 시점은 계약 시점과는 무관하나, 통상적으로 계약 시점에서 개인정보 이전이 발생하므로 계약 시점을 개인정보 이전 행위의 기준으로 생각하되,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저장 매체 및 문서 등의 양도 시점이 계약 시점과 달라, 계약 시점과 개인정보 이전 시점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지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문의 예

OO는 2008년 1월 1일자로 □□□홈페이지의 운영을 XXX사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 또한 XXX사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홈페이지 운영을 양도받은 XXX사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XXX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xxx-99번지
- 전화번호 : 02-123-4567
- 기타 연락처 : webmaster@xxxxxx.xx.xx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000팀 000
- 전화 : 02-400-7000
- 메일 : webmaster@000.00.00

라. 영업양수자 등의 '별도의 동의' 획득 의무 규정

- 영업양수자 등은 당초의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자 등이 당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이는 영업양도 등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었더라도 그 개인정보는 당해 영업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 사업자들이 영업양도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자사의 다른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고

- ▶ 기업 합병에 따라 두 회사에서 취급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결합하여 홍보할 경우
 - 당초 이용자로부터 신상품 홍보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지라도 기업 합병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회사의 상품을 결합하여 신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고자 홍보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벌칙 조항

- 영업양도자 또는 영업양수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76조제2항제2호)
- 영업 양수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1조제3호)

5.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등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④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⑤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규정취지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운영상의 과실이나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보통신방법에서는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주요 노출 사례
 - 2006년 주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77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 리니지 등 게임 사이트에서 대규모 명의도용 사태 발생(122만여 명 명의도용)
 - 국내 은행에서 대량의 고객정보가 담긴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 발송되어 고객정보 노출(1인당 10만원의 배상판결)

(2) 사업자 조치사항

-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 접속 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에 대한 확인·감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시와 해설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부여되도록 '11. 1월 고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자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대하여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 신설 및 관련 조문 수정
 - 내부관리계획 정의 신설 : 제2조제2의2호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 내부관리계획 관련 조항 수정 : 제3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호 현행 동일)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 보호조치 의무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보호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

-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사항 수정 : 제8조 ①현행 유지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그 외 출력·복사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사전 승인 의무 등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사항 관련 조항 삭제.
 - ※ 밑줄 그은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단, '11. 1월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내에서는 상기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벌칙 조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6조제1항제3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73조제1호)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제64조의3제1항제6호)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근거 법령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①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규정취지

- 경제·사회·문화에 걸친 국제 교류가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 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또한 빈번해졌습니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로 개인정보가 옮겨지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 조치사항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①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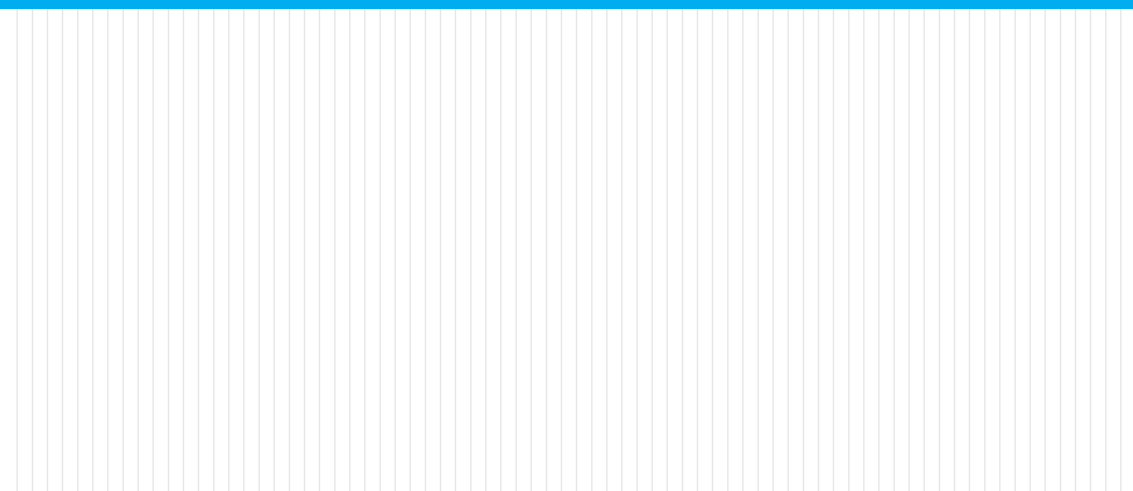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앞서 설명한 동의 방법과 같습니다.
- 국외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우리나라와 법적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도 최소한의 보호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쪽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이전 계약서 작성 시에는 그 조치 사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4) 벌칙 조항

- 벌칙 조항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행정 규제 기준

1. 과징금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3. 정리

IV. 행정 규제 기준

1. 과징금

(1) 과징금의 의미

-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목적외 이용, 동의 없는 취급위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및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부과한 바 있으나,
 -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권(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의 불법적인 취급을 방지하거나 후속적인 피해 예방이 주목적인 인격권 보호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있어서는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동의 없는 텔레마케팅과 같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 규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은 7가지 경우입니다.
 - ①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② 이용자 동의 없는 민감정보 수집, ③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 이용, ④ 이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⑤ 계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 처리한 경우, 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⑦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영업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영업이익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특성 상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매출액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1억 이하로 상한선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기준

-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망법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권한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69조의1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회)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세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과징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① ‘기본 과징금’을 기반으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② ‘의무적 조정 과징금’,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위반행위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③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기본 과징금

- 기본 과징금은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산출됩니다.

①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 ② 부과 기준율

-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식·도난·노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 매출액의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¹⁴⁾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산정시 고려 사항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 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 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업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부과 기준율이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말 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천분의 9,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에는 1천분의 7, 일반 위반 행위의 경우는 1천분의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시행령 제69조의2제4항 <별표8>에서 규정한 바 와 같이 ①고의·중과실 여부, ②영리 목적의 유무, ③위반행위로 인한 개인 정보의 피해규모, ④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⑤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중에서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즉,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

14)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 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반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합니다.

-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하게 됩니다.

감경 사유

- ①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②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 기본 과징금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②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 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 또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는 이 상기 원칙으로 산출된 금액과 행위의 중대성 등급별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중대성	일반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비교 기준	5,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50/100의 범위 내 가중 혹은 감경에서 과징금의 규모를 가중하거나 감경됩니다.
 - 위반 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기간) 위반 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

구분	단기 위반행위	중기 위반행위	장기 위반행위
위반 기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가중 기준	가중 없음	100분의 25 가산	100분의 50 가산

- 이 경우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 또한,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위반 횟수) 위반횟수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기 위반행위
최초 행위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100분의 50분 감경
2회 이상 위반 행위	최근 3년간 1회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없음

- 이 경우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은 제외합니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기준

-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도, 위반행위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의 50/100의 범위 내 가중 혹은 감경이 가능합니다.
- 이 기준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사항	비율
가중 사유	①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이내
	②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③ 상기 2개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감경 사유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이내
	② 개인정보 위반에 관한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이내
	③ 상기 2개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2. 과태료(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의 반복 횟수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 제재를 할 수는 없으나, 해당 행위를 중지토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중 지 명령에 미 이행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행위 중지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제24조),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 이 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제25조), 영업양수자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26조③), 개인정보 오류정정 요청에 대 한 필요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이용(제30조⑤)
- 이외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시정명령 미이행	1회	2회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 미공개(제25조) •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 	과태료 (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 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제23조)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 23조의2) •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이행 (제28조) •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 이용자의 동의철회 · 열람 · 정정요구 미조치 (제30조③,④) • 이용자의 동의철회 · 열람 · 정정요구를 개인 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함(제30조⑥)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3. 정리

- 위의 과태료 ·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과징금	
			행위 중지·시정명령 미이행	1회	2회		3회
개인정보 수집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매출액의 1/100 이하	
	•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미제공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제23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23조의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24조)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매출액의 1/100 이하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2)						
개인정보 취급위탁	•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제25조)						
	• 개인정보 취급위탁사실 미공개(제25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2,000	-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 영업양수자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제26조③)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600	600	1,200	2,000	-
	•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2)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제28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누출(제28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	1억 이하

구분	주요 내용	벌칙	과태료 부과 기준			과징금	
			행위 중지· 시정명령 미이행	1회	2회		3회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28조의2)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이용자 권리	•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제30조③,④)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 개인정보 오류정정 요청에 대한 필요조 치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제3자 제 공·이용(제30조⑤)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000	-	-	-	매출액 의 1/100 이하
	• 이용자의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함(제 30조⑥)	과태료 (3천만원 이하)	1,000	1,000	2,000	3,000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V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라.
3.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다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4. 개인정보를 A~Z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라.
5.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투명하게 밝혀라.
6.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라.
7.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8.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라.
10.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

1.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라!

- ‘동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필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충분히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공개된 개인정보(전화번호부, 공개된 게시판 등)라 할지라도 공개목적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 사상·신념·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노출로 인한 정보 주체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사업자들의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해 본다
 - ⇒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서비스 제공에 과연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불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고,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시 손해배상 등을 초래하여 사업자의 경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라!

- ‘제3자’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정보업무수탁자·영업양수인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정보 주체 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 제3자 제공의 사례

- 모자회사, 그룹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조직의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업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다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서면, 전자메일, USB 등의 이동저장매체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시건장치,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3.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다면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 ‘위탁’이란 계약의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일체를 포함한다.

※ 위탁 사례 : 대리점, 콜센터, A/S센터, 요금의 회수·결제대행(채권추심업체), 상품 홍보 등을 위한 텔레마케팅 등

- 사업자가 개인정보취급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금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위탁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편 수탁자의 미흡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사례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현황을 계약체결 때와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지 않아서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상황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것을 방치하여 재위탁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4. 개인정보의 A~Z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라.

-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이행
 -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 고객이 제기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사항 처리 및 감독
 - 소속직원과 수탁자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에 대한 사전승인
 -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 고객센터실, CRM관련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취급 부서의 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투명하게 밝혀라.

- 사업자는 투명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 주체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사의 방침(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 함)을 공개해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사업자는 고객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내용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해

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 연결화면에 공개
-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케 함
-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6.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라.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관리적 보호조치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

※ 기술적 보호조치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와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

- 특히, 사업자가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리적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개인정보취급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하여,

-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취급업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며, 정규직 원에 한하지 않고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을 포함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예 : 고객불만을 처리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고객을 직접 상대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할 때는 인사명령 등으로 공식화하고,
 - 개인정보취급자 이외의 자가 개인정보 DB에 접근하면 내부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한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 징구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8.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절차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해야 하고, 감사대상, 목적 범위, 절차, 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감사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 감사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9.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정보 주체의 권리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라.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즉, 정보 주체는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권, 열람·제공요구권, 오류정정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 ※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행사의 사례
 - 회원탈퇴 요구
 -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한 상품광고 등의 수신거부 요구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 요구
 - 변경된 개인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 요구
- 정보 주체가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요구,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쉬워야 한다.
 - 예를 들어, 회원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원탈퇴를 할 때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회원탈퇴 기능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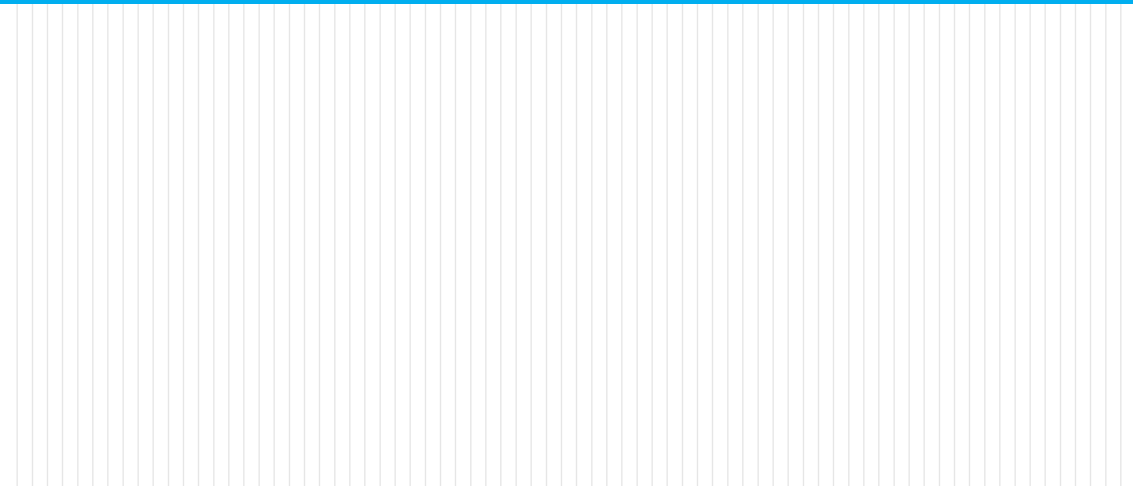
10.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

-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 다만 상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구체적인 사례
 -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 회원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된 때
 - 배송정보의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 설문조사, 이벤트 등 일시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당해 설문조사, 이벤트가 종료한 때
 - 본인확인 정보의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한 때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당해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를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 ※ 개인정보 파기방법 예 :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개인정보가 보관된 하드디스크를 버릴 때는 ‘로우포맷’ 명령으로 포맷하거나 일반 포맷 후 불필요한 정보를 여러 번 덮어씌움
 -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는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접근권한을 통제하거나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률	시행령 ※ 관련 처벌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p> <p>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p> <p>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p>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법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법 제23조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제23조제2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p> </div>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가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4조(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4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②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를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 법 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5조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0조(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같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②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영업양수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제3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로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수집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 제27조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전년도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②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제1호에 따

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라 준용 경우 포함)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

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①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08.12.14 시행)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

※ 법 제28조의2제1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29조 본문(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 법 제30조제3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0조제4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0조제5항(제67조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 법 제30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업양수자등이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양수자등이 동의철회, 열람요구 등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대리인의 동의철회, 열람 요구 등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3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제6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①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등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3항, 제27조의2 제1항·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가. 재화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 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 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8.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 또는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8]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9조의2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것
- 나.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할 것

2. 기본과징금

근거 법조문	기본 과징금
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9,000만원 중 낮은 금액 나. 중대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7,000만원 중 낮은 금액 다. 일반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5,000만원 중 낮은 금액

비고

1.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2. “부과기준율”이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말하며, 1천분의 9(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7(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5(일반 위반행위)로 한다.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 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3. 의무적 조정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5. 세부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23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2.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3.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			
4. 법 제29조 본문(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			
5. 법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법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			
6. 법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7.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7호	750	1,500	3,000
8.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8호			
9.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9호			
10.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0호			
11. 법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1호			
12.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제1호부	법 제76조제1항제12호			

21.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5호	1,000		
22. 법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6호			
23. 법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7호	300	600	1,000
24. 법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 또는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8호			
25. 법 제46조의3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9호			
26. 법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0호			
27.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1호			
28.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2호			
29.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3호			
30.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4호			
31.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5호			
32.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6호			
33.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7호			
34.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8호			
35.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9호			
36.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0호			
37.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법 제76조제3항제21호			

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38.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2호		
39.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3호		
40.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24호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유형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3. 위 표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 8]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4항 및 [별표 8]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제3조(기본과징금) ①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8] 제2호 비고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산정금액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낮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산정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관련 법조문	기본 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7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5천만원

③영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본과징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일반 위반행위	2억원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관련 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방식
2.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시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3.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의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영 [별표 8] 제2호 비고 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일반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③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3.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제6조(의무적 조정과징금) ①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②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③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의적 조정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조사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임의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된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임의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I. 가중사유 및 비율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II.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1년 1월 인쇄

2011년 1월 발행

발행처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인쇄처 : 호정씨앤피

Tel : (02) 2277-4718

(비매품)

- 본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Fax. 02-750-2769 www.kcc.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138-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Tel. 02-405-5118 Fax. 02-405-5119 www.kisa.or.kr